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원*

Family Policy for Enactment of Healthy Family Act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정민자**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Jung, Min-J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amily policy for enactment of Healthy Family Act. Through this thesis 2 points are suggested. One point is the orientation and subjects of family policy are contextualized by governancial policy viewpoint. Another point is that family supporting programs are able to provided by 6 areas : Fostering family network and community and family culture, Protecting family(home) and family function, Developing family strength, Preventing family problems and recovering family(home), Providing information for healthy family and Integrating of network-nation policy, local government, community and family etc.

▲주요어(Key Words) : 가정정책(family policy), 건강가정기본법(Healthy Family Act)

I. 들어가면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정책적 지원이라 함은 곧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정정책”的 실현을 말한다.

여기서 “정책”이라 함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고안된 실제로 나타나거나 잠재되어 있는 정부의 계획이나 활동”으로서 정책의 주체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다(노시평외3, 2003:6). 그런데 최근에 논의되는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¹⁾, 국가, 사회, 기업, 가족(가정)간에 개입의 정도를 어떻게 보고 활동화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가족(가정)에 대한 정책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 전통적인 행정(관

료적인 정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우는 정부활동이 직접적이며,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와 관료중심형이며, 자출중심이며 사후치료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 반면에 거버넌스(기업가적 정부)는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에 벗어나 국민을 고객으로 하고 역량강화와 업무중심으로 서비스제공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수익창출과 예방과 예측의 가치를 갖는다. 즉 참여와 팀워크, 협의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을 하게 된다.(김석준외 2000:66). 여기서 우리는 가족(가정)에 대하여 관료적인 정부의 마인드가 아닌 거버넌스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시점을 인식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가족복지서비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사후치료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서비스로 일관되어 왔으므로, 한국의 가족(가정)정책이란 아주 미약하고 분열된 수준이었다.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개입과 사회로부터 무관심한 가정 속에 존재하는 일부 가족원(개인)들은, 전통적인 가족가치 또는 제도에 회생되거나 격동하는 사회에 매몰되면서 가족(가

* 2004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것임.

** 주 저 자 : 정민자 (E-mail : mjagnes@korea.com)

1) 사전적인 의미로는 통치의 행위, 과정, 권력이나 정부 또는 통제나 권위를 적용대상에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통치의 행위나 방식 규범체계를 말한다. Stoker는 거버넌스를 상호의존성, 자원의 교환, 책임의 규칙과 국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자기 조직적인 조직간의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정)을 증오하거나 사회변동 속에 가정을 잃어버리는 혼란과 가족(가정)에 대해 물가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가정)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가치로부터 가족원의 일탈(청소년 가출, 주부 가출, 노숙자), 가족갈등과 불화의 결과물(이혼, 유기,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 유기 및 부양기피, 자녀유기, 가족동반자살, 가족원간 정서적 거리 유지, 친족간의 결별 등)이 사회문제로 잇슈화되어 국가와 사회의 부담 요인인 된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적 실현은 관료적인 정부가 아닌 거버넌스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어떠한 거버넌스가 유용한지는 논쟁이 될 수 있지만, 본 논고에서는 사회중심 거버넌스의 기본원리인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응집력 있는 공동체의 존중, 민간부분과 국가부분의 일을 적절히 분담하는 작은 정부, 시민의식이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동을 통한 수평적인 조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정책의 주체로서 정부를 받아들이고 정책적 지원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논문은 기존의 가정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정정책적 지원 틀을 제안하기 위하여, 문헌과 관련 정책 자료들을 분석해보고,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신을 실현 할 수 있는 건강가정정책의 실천적 과제를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개념형성이나 정책 개발의 기초단계에서 가능한 혁신적인 패러다임 제시에서 볼 수 있다.

III. 가정(가족)정책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주체와 방향성

1. 가정(가족)정책 주체 네트워크

관료적인 정부의 경우에는 정책의 주체로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공급의 규칙을 제정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주었지만, 사회중심 거버넌스에서는 서비스내용 결정과 서비스를 실현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참여시키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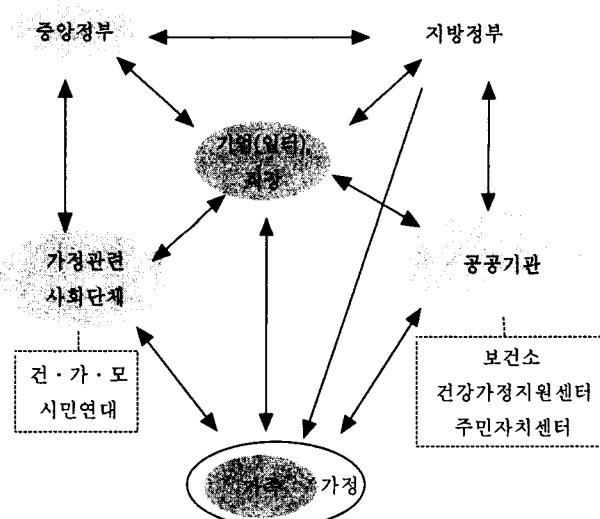
정책의 주도권은 적당히 분배되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국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사회기관, 관련단체, 가정들간의 적절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정책이 비록 정부가 주체가 된다 할지라도 작은 정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방자치 행정에서 자치단체장들은 선출직인 관계로 지역주

민의 복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받고 지역사회와 단체들과 지역기업(직장)들간의 유대를 통한 지역사정에 맞는 가정(가족)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림1>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족 문제는 지역의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서로가 협조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가족(가정)정책의 수준은 여기에 접목되지 않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전달체계(조직), 재정적인 면, 활동의 수준, 통합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현실적인 지원구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항,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9조 제35조, 제36조 등에서 정책의 주체들을 언급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업무를 기획하고 정책을 실현해야 하지만 개인이나 가족, 가정,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업무를 위탁받거나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중심 거버넌스적인 분담체계를 법정신에 담고 있다.

화살표가 쌍방적인 것은 서로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가정은 수혜자임과 동시에 자생력이 갖게 되면 사회와 정부, 기업, 국가 등에 새로운 응호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1> 가정정책의 주요 주체들의 네트워크

2. 가정(가족)복지정책을 위한 방향성

사회복지가 발전된 사회일수록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채택됨으로써 특별한 도움이나 보호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기능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공적인 재정원조(공적 부조)와의 분리가 일어나고 빈곤하거나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Kahn,1969:21,조홍식 재인용,1995) 이러한 경향은 복지선진국에서 사후치료적이고 잔여적인 복지サービ-

스를 예방적이고 일반적인 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정책을 실현하게 되었다. 예를 든다면 독일의 경우 정부는 저출산, 인구노령화, 여성취업확산에 따른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잔여적 가족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즉 가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가족을 그들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지닌,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고유한 능력 때문에 보호해야한다는 식으로 기본인식을 정립하였다. 최경석 등(2001: 95-96)은 가족복지정책의 국가별 유형분류에서 한국의 가족정책은 그동안 가족과 친족책임주의와 특정가족 기능을 보완하는 가족기능보완적인 정책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족친화적인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가족친화적 정책²⁾이란 어떠한 가족이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보호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가족중심의 사회정책이어야 한다.

김승권 외(2003:46-47)의 연구에서도 가정복지정책의 비전 제시에서 고도의 산업사회와 서구 가치관의 만연으로 구조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모든 가족을 안정시키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다양한 가족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발생한 가족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정복지정책의 장기 비전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에서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상위 개념으로 하고 급격한 사회변동에 적응을 위한 가족체질의 강화, 가족친화적 복지환경에서의 건강한 가정생활 보장,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의 추구 등을 하위개념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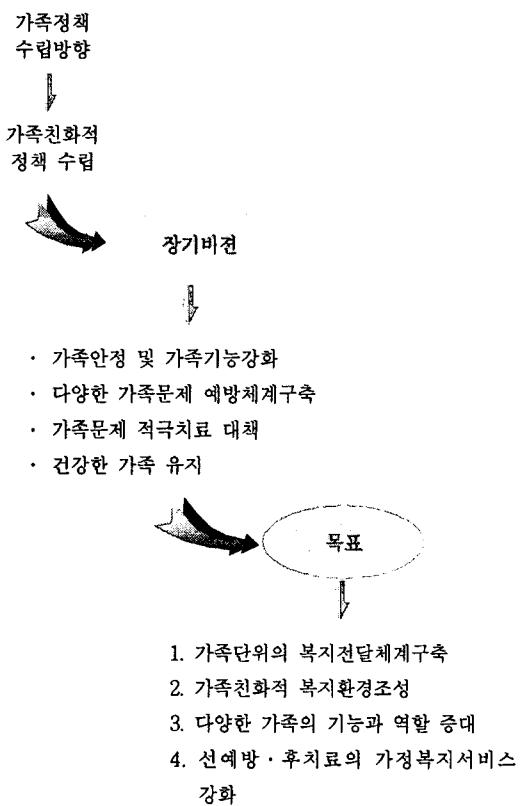
이러한 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목표는 1) 가족단위의 복지 전달체계 구축, 2) 가족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에 의한 가족 안정의 도모, 3) 다양한 가족기능 및 역할 증대정책의 강화, 4) 선예방 후치료 중심의 가정복지 서비스의 강화를 두어야 한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³⁾(참여복지기획단, 2003:438-440)에서도 정책의 방향을 첫째, 사회보장 5개년 계획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보편적·예방적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둘째, 기존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나아가 앞으로 증가하게 될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해체 예방과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네째, 일상의 복지, 생활복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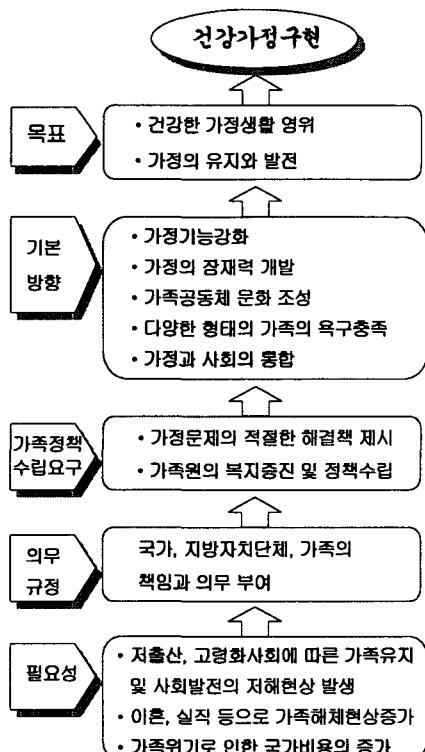
- 2) 가족친화적 가족정책의 기준이란 모든 가족의 유형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도적으로 지원, 가족의 다양성의 대처방식이 권리보장형태로 정책 실천, 가족원의 욕구 실현이 한 가족으로서 욕구, 상호간에 보완되어야 할 욕구 등의 최적의 상황이 충족, 정부,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등 복지제공 주체의 역할이 상호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최경석 외5, 2001:141-142)
- 3) 참여복지 5내년 계획은 2004-2008년까지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참여복지기획단에 의해 보고한 보고서이다.

필요성을 강화해야 시켜야 한다. 즉 여기서 가정은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스스로 복지의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에 함께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추구하는 정책수립의 요구와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가정문제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가족원의 복지증진과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그에 위한 기본방향은 1) 가정기능의 강화 2) 가정의 잠재력 개발 3) 가족공동체문화조성 4) 다양한 형태의 가족 욕구 충족 5) 가정과 사회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정민자, 2004:268) 따라서 가정(복지)정책의 방향은 가족친화적 복지정책을 근간으로 하며, 일상성과 보편성, 예방성을 치료적인 면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된다. 여기서 건강한 가정(가족), 건강한 가정생활이 주요한 목표가 되며 가정의 안정과 보호, 가족의 기능과 역할 강화, 가족단위의 복지활동 등이 중요한 행동 목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가족과 친족책임주의 가족정책과는 구별되는데, 기본적으로 관료적인 정부가 아니라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정책의 주체자들이 적극적으로 기본방향에 동의하고 앞에서 제시한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가족과 친족에 맡기던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는 적극적인 국가정책이 되는 것이다.<그림3 참고>



<그림 2> 가정복지정책 수립 방향



<그림 3>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틀

III.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

1. 한국 가족복지 관련 정책 체계 현황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가정정책과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 참고> 가정(가족)복지정책에서 중요한 개념은 “전체로서 가족(가정)”, “가족 단위의 중요성” “가족성”을 고려한 정책이어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의 가족관련 정책은 개인 대상별 정책이 주를 이루었고 인구정책의 가족계획에서 가족단위를 고려한 아주 소극적인 가족정책이었다. <표1>에서 보면 전체로서 가족을 고려한 정책은 4대 보험과 기초 생활보장제도 주택정책 가정폭력 대책 등이 있으며 민간시장부분의 정책으로는 퇴직금제도 경조사비 가족상담 등이 기업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족과 관련한 개인 대상별 정책은 아동, 노인, 여성, 고령자를 고려한 정책이었으며 가족통합적인 서비스는 아직 미비하다. 또한 대부분이 각각의 행정 부서에서 가족(가정)이 주요 복지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관계 법률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예를 든다면 모·부자가정은 모·부자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노인가족의 문제는 노인복지법에서 일부 다루어지는 형태를 이루어지고 있다. 총체적으로 가정과 가족을 위한 법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 안되어 온 것도 가정(가족)단위로 실행되어지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통합적인 가정정책의 근거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 동

안 여성발전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여성관련 정책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가정관련 정책을 지원해주는 법안이 부채하다보니 전통적으로 가정복지행정 체계마저 행정의 구조조정에서 밀려나서 지방자치행정체계로 가면 가정복지과는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여성정책과(또는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 업무를 일부 보는 식으로 흡수되는 상황이 되다보니 더욱 가정(가족)업무는 미약해지고 업무가 분산되어 가정(가족)관련은 정책은 제각각 실행되어 정확한 평가나 전체로서 가족정책을 수행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은 상태가 되어 버렸다.

가정은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취급된다. 사회의 기본단위이자 국가의 주요 정책대상인 가족(가정)을 소홀히 다룬 것이 오늘날 국가유지와 국가 경쟁력의 주요 생산과 재생산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야기 시키는 상황이 되었다.

<표 1> 한국의 가족관련 정책과 서비스 범주(최경석 외, 2001, 재인용)

정책대상	정책주체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정책	국가부문	4대보험(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 가정폭력방지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공제제도, 주택정책
	시장부문	퇴직금, 재형저축장려금, 경조사비 지원,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등
	비시장부문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내 아동을 고려한 정책	국가부문	공제제도, 보육사업, 학교복지사업, 성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입양·위탁·시설보호,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시장부문	직장보육제도, 보육료지원, 자녀학비 지원 등
	비시장부문	아동상담, 성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아동여가활동 지원, 입양·위탁·시설보호사업, 지역사회 결연사업 등
가족내 노인을 고려한 정책	국가부문	공제제도, 경로연금, 노인취업알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경로우대제 등
	시장부문	시설보호, 주단기 보호, 치매노인 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비시장부문	노인복지시설, 주단기 보호, 치매노인 전문치료,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가족내 여성을 고려한 정책	국가부문	공제제도, 고용관련서비스(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민연금(가급연금, 연금분할), 모자복지·보건사업,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등, 생업자금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보육, 여성사회교육사업
	시장부문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보육사업, 자녀학비·양육비 지원
	비시장부문	여성사회교육등

김승권외 4 등(2003: 143-144)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단위로서 가족과 가정생활의 측면을 고려하여 가정생활문화를 고려하여 <표2>와 같이 가족정책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책에서 소득보장이나 의료정책 주거정책 등에서 일부분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다양한 가족원들을 위기(주로 문제나 위기, 보호대상으로 개인과 가족원들) 상황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위주로 되어 있다. 2003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본다면 학대아동이나 자녀양육의 위기가 온 경우에 가정보호를 받도록 가정위탁지원을 하도록 하거나, 입양아동, 장애아동가정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가정의 중요성을 도입한 법과 제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표2>에서도 가족의 통합적인 정책은 찾기가 어렵다.

<표 2> 가족정책의 분류와 내용

구 분	가족정책의 내용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	가족내 대상과 가족유형을 고려한 정책
소득보장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적부조(기초생활 보장제도) · 조세(소득 세 공제) ·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자가정 대상 · 노인대상(경로연금, 고용지원, 경로우대) · 소년소녀가정 대상 · 고용관련정책
주거보장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정을 위한 주거정책(영구임대 주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자가정 대상(주거비지원, 보호시설) · 노인대상(재가목적/입주보호 목적)
양육 및 부양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지원(영유아보육정책, 육아휴직제도, 모·부자가정 자녀양육지원) · 노인부양지원(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의료보장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제도 · 의료보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지원(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 노인대상(노인건강진단제도, 치매신고상담센터, 방문간호서비스)
가정생활 문화 관련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정책 · 자원봉사활동 · 가정의례 · 소비관련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가족 보호를 위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대상(아동학대방지 및 예방사업)
기타 가족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의 서비스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자가정 대상 · 노인대상 · 아동대상/소년소녀가정대상

2.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정정책 영역과 지원

건강가정기본법의 실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장기적 단기적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하는 주제이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가동하거나 연구 용역을 주어서 실행해야 할 영역이다. 본 논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책화를 하기 위한 영역 분류와 건강가정사업(서비스)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정책 입안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분담되어 진행 될 수 있는 주제들은 논의하고,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개발영역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가정정책행정과 재정적 지원

(1) 가정정책의 영역과 행정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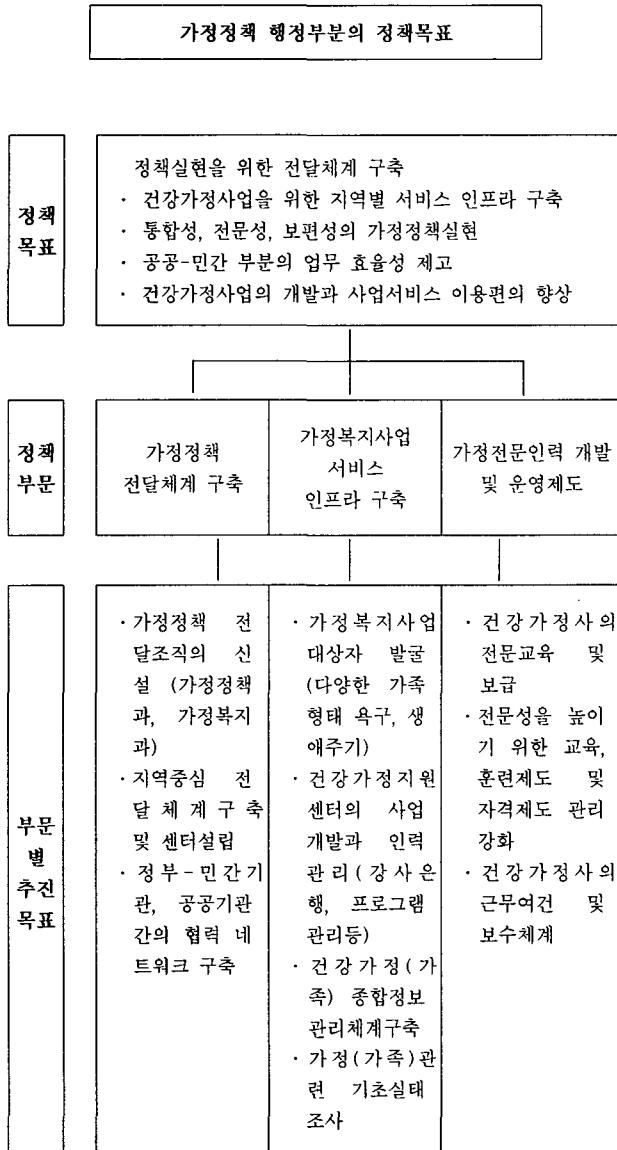
본 법 제13-14조, 제34-36조 등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포함)는 가정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도록 하고 행정과 건강가정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필요시에는 위탁을 하여民間부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나 개인 등이 건강가정사업을 사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게 하여 공동체주의의 참여하는 시민들을 통한 정책의 주체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표3>에서 보듯이 가정정책 행정은 통합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 구축, 통합적, 전문적 보편적인 가정정책 실현, 공공부문과民間부분의 업무 효율성의 제고, 건강가정사업 개발과 서비스의 이용편의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가정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가정정책과, 가정복지과 등)을 신설하고 지역중심의 전달체계를 전국적으로 만들고 연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보화시대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민간단체의 위탁 등)과 가족단체연대들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정책 관련 전문인 양성과 교육제도, 훈련기관 자격제도 관리, 근무여건과 보수체계 등을 구축하여 전문인력 중심 인적 시스템을 가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인프라구축은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기존의 다양한 가정(가족)의 욕구와 진단을 통해 대상자의 발굴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원하고, 사업의 개발과 보급 및 연구, 교육, 인력개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표 3> 가정정책 행정부문의 정책 목표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4>에 정리하였다.

법과 제도의 도입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거론될 것이라고 보면, 그 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정관련 단체 등이 노력하여 정책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은 앞으로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맞게 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예방이나 이혼상담 및 자녀양육비와 관련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격이나 구상권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관련 법령을 통해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사노동가치평가제 및 기관 설립은 소비자경제 전문분야와 의논하여 국가표준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다시 각종 경제지표, 가정가치 평가 및 가정정책화에 피드백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건강가정정책의 법제도적 추진과제

정책 명/구 분	주체	내용	관련법 조항	비고
법과 제도의 도입	국가/지방자치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건강가정위원회 및 시도 시원회 구성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가정봉사원제도 도입 가사노동평가기관도입 가족실태조사 기관 및 평가기관 건강가정사제도 교육전문교육기관 가정관련단체 육성 가정정책행정전담조직 이혼예방 및 이혼지원 관련 상담소 및 전문가 도입 가족보호(요양)전문시설 설치 가족(가정)관련 법령의 개정 	1) 13 - 15 2) 20 3) 30조 4) 32조 5) 34 - 36조 6) 34 - 36조 7) 34 - 36조 8) 34 - 36조 9) 34 - 36조 10) 34 - 36조 11) 34 - 36조 12) 34 - 36조 13) 34 - 36조 14) 34 - 36조 15) 34 - 36조 16) 34 - 36조 17) 34 - 36조 18) 34 - 36조 19) 34 - 36조 20) 34 - 36조 21) 34 - 36조 22) 34 - 36조 23) 34 - 36조 24) 34 - 36조 25) 34 - 36조 26) 34 - 36조 27) 34 - 36조 28) 34 - 36조 29) 34 - 36조 30) 34 - 36조 31) 34 - 36조 32) 34 - 36조 33) 34 - 36조 34) 34 - 36조 35) 34 - 36조 36) 34 - 36조 37) 34 - 36조 38) 34 - 36조 39) 34 - 36조 40) 34 - 36조 41) 34 - 36조 42) 34 - 36조 43) 34 - 36조 44) 34 - 36조 45) 34 - 36조 46) 34 - 36조 47) 34 - 36조 48) 34 - 36조 49) 34 - 36조 50) 34 - 36조 51) 34 - 36조 52) 34 - 36조 53) 34 - 36조 54) 34 - 36조 55) 34 - 36조 56) 34 - 36조 57) 34 - 36조 58) 34 - 36조 59) 34 - 36조 60) 34 - 36조 61) 34 - 36조 62) 34 - 36조 63) 34 - 36조 64) 34 - 36조 65) 34 - 36조 66) 34 - 36조 67) 34 - 36조 68) 34 - 36조 69) 34 - 36조 70) 34 - 36조 71) 34 - 36조 72) 34 - 36조 73) 34 - 36조 74) 34 - 36조 75) 34 - 36조 76) 34 - 36조 77) 34 - 36조 78) 34 - 36조 79) 34 - 36조 80) 34 - 36조 81) 34 - 36조 82) 34 - 36조 83) 34 - 36조 84) 34 - 36조 85) 34 - 36조 86) 34 - 36조 87) 34 - 36조 88) 34 - 36조 89) 34 - 36조 90) 34 - 36조 91) 34 - 36조 92) 34 - 36조 93) 34 - 36조 94) 34 - 36조 95) 34 - 36조 96) 34 - 36조 97) 34 - 36조 98) 34 - 36조 99) 34 - 36조 100) 34 - 36조 101) 34 - 36조 102) 34 - 36조 103) 34 - 36조 104) 34 - 36조 105) 34 - 36조 106) 34 - 36조 107) 34 - 36조 108) 34 - 36조 109) 34 - 36조 110) 34 - 36조 111) 34 - 36조 112) 34 - 36조 113) 34 - 36조 114) 34 - 36조 115) 34 - 36조 116) 34 - 36조 117) 34 - 36조 118) 34 - 36조 119) 34 - 36조 120) 34 - 36조 121) 34 - 36조 122) 34 - 36조 123) 34 - 36조 124) 34 - 36조 125) 34 - 36조 126) 34 - 36조 127) 34 - 36조 128) 34 - 36조 129) 34 - 36조 130) 34 - 36조 131) 34 - 36조 132) 34 - 36조 133) 34 - 36조 134) 34 - 36조 135) 34 - 36조 136) 34 - 36조 137) 34 - 36조 138) 34 - 36조 139) 34 - 36조 140) 34 - 36조 141) 34 - 36조 142) 34 - 36조 143) 34 - 36조 144) 34 - 36조 145) 34 - 36조 146) 34 - 36조 147) 34 - 36조 148) 34 - 36조 149) 34 - 36조 150) 34 - 36조 151) 34 - 36조 152) 34 - 36조 153) 34 - 36조 154) 34 - 36조 155) 34 - 36조 156) 34 - 36조 157) 34 - 36조 158) 34 - 36조 159) 34 - 36조 160) 34 - 36조 161) 34 - 36조 162) 34 - 36조 163) 34 - 36조 164) 34 - 36조 165) 34 - 36조 166) 34 - 36조 167) 34 - 36조 168) 34 - 36조 169) 34 - 36조 170) 34 - 36조 171) 34 - 36조 172) 34 - 36조 173) 34 - 36조 174) 34 - 36조 175) 34 - 36조 176) 34 - 36조 177) 34 - 36조 178) 34 - 36조 179) 34 - 36조 180) 34 - 36조 181) 34 - 36조 182) 34 - 36조 183) 34 - 36조 184) 34 - 36조 185) 34 - 36조 186) 34 - 36조 187) 34 - 36조 188) 34 - 36조 189) 34 - 36조 190) 34 - 36조 191) 34 - 36조 192) 34 - 36조 193) 34 - 36조 194) 34 - 36조 195) 34 - 36조 196) 34 - 36조 197) 34 - 36조 198) 34 - 36조 199) 34 - 36조 200) 34 - 36조 201) 34 - 36조 202) 34 - 36조 203) 34 - 36조 204) 34 - 36조 205) 34 - 36조 206) 34 - 36조 207) 34 - 36조 208) 34 - 36조 209) 34 - 36조 210) 34 - 36조 211) 34 - 36조 212) 34 - 36조 213) 34 - 36조 214) 34 - 36조 215) 34 - 36조 216) 34 - 36조 217) 34 - 36조 218) 34 - 36조 219) 34 - 36조 220) 34 - 36조 221) 34 - 36조 222) 34 - 36조 223) 34 - 36조 224) 34 - 36조 225) 34 - 36조 226) 34 - 36조 227) 34 - 36조 228) 34 - 36조 229) 34 - 36조 230) 34 - 36조 231) 34 - 36조 232) 34 - 36조 233) 34 - 36조 234) 34 - 36조 235) 34 - 36조 236) 34 - 36조 237) 34 - 36조 238) 34 - 36조 239) 34 - 36조 240) 34 - 36조 241) 34 - 36조 242) 34 - 36조 243) 34 - 36조 244) 34 - 36조 245) 34 - 36조 246) 34 - 36조 247) 34 - 36조 248) 34 - 36조 249) 34 - 36조 250) 34 - 36조 251) 34 - 36조 252) 34 - 36조 253) 34 - 36조 254) 34 - 36조 255) 34 - 36조 256) 34 - 36조 257) 34 - 36조 258) 34 - 36조 259) 34 - 36조 260) 34 - 36조 261) 34 - 36조 262) 34 - 36조 263) 34 - 36조 264) 34 - 36조 265) 34 - 36조 266) 34 - 36조 267) 34 - 36조 268) 34 - 36조 269) 34 - 36조 270) 34 - 36조 271) 34 - 36조 272) 34 - 36조 273) 34 - 36조 274) 34 - 36조 275) 34 - 36조 276) 34 - 36조 277) 34 - 36조 278) 34 - 36조 279) 34 - 36조 280) 34 - 36조 281) 34 - 36조 282) 34 - 36조 283) 34 - 36조 284) 34 - 36조 285) 34 - 36조 286) 34 - 36조 287) 34 - 36조 288) 34 - 36조 289) 34 - 36조 290) 34 - 36조 291) 34 - 36조 292) 34 - 36조 293) 34 - 36조 294) 34 - 36조 295) 34 - 36조 296) 34 - 36조 297) 34 - 36조 298) 34 - 36조 299) 34 - 36조 300) 34 - 36조 301) 34 - 36조 302) 34 - 36조 303) 34 - 36조 304) 34 - 36조 305) 34 - 36조 306) 34 - 36조 307) 34 - 36조 308) 34 - 36조 309) 34 - 36조 310) 34 - 36조 311) 34 - 36조 312) 34 - 36조 313) 34 - 36조 314) 34 - 36조 315) 34 - 36조 316) 34 - 36조 317) 34 - 36조 318) 34 - 36조 319) 34 - 36조 320) 34 - 36조 321) 34 - 36조 322) 34 - 36조 323) 34 - 36조 324) 34 - 36조 325) 34 - 36조 326) 34 - 36조 327) 34 - 36조 328) 34 - 36조 329) 34 - 36조 330) 34 - 36조 331) 34 - 36조 332) 34 - 36조 333) 34 - 36조 334) 34 - 36조 335) 34 - 36조 336) 34 - 36조 337) 34 - 36조 338) 34 - 36조 339) 34 - 36조 340) 34 - 36조 341) 34 - 36조 342) 34 - 36조 343) 34 - 36조 344) 34 - 36조 345) 34 - 36조 346) 34 - 36조 347) 34 - 36조 348) 34 - 36조 349) 34 - 36조 350) 34 - 36조 351) 34 - 36조 352) 34 - 36조 353) 34 - 36조 354) 34 - 36조 355) 34 - 36조 356) 34 - 36조 357) 34 - 36조 358) 34 - 36조 359) 34 - 36조 360) 34 - 36조 361) 34 - 36조 362) 34 - 36조 363) 34 - 36조 364) 34 - 36조 365) 34 - 36조 366) 34 - 36조 367) 34 - 36조 368) 34 - 36조 369) 34 - 36조 370) 34 - 36조 371) 34 - 36조 372) 34 - 36조 373) 34 - 36조 374) 34 - 36조 375) 34 - 36조 376) 34 - 36조 377) 34 - 36조 378) 34 - 36조 379) 34 - 36조 380) 34 - 36조 381) 34 - 36조 382) 34 - 36조 383) 34 - 36조 384) 34 - 36조 385) 34 - 36조 386) 34 - 36조 387) 34 - 36조 388) 34 - 36조 389) 34 - 36조 390) 34 - 36조 391) 34 - 36조 392) 34 - 36조 393) 34 - 36조 394) 34 - 36조 395) 34 - 36조 396) 34 - 36조 397) 34 - 36조 398) 34 - 36조 399) 34 - 36조 400) 34 - 36조 401) 34 - 36조 402) 34 - 36조 403) 34 - 36조 404) 34 - 36조 405) 34 - 36조 406) 34 - 36조 407) 34 - 36조 408) 34 - 36조 409) 34 - 36조 410) 34 - 36조 411) 34 - 36조 412) 34 - 36조 413) 34 - 36조 414) 34 - 36조 415) 34 - 36조 416) 34 - 36조 417) 34 - 36조 418) 34 - 36조 419) 34 - 36조 420) 34 - 36조 421) 34 - 36조 422) 34 - 36조 423) 34 - 36조 424) 34 - 36조 425) 34 - 36조 426) 34 - 36조 427) 34 - 36조 428) 34 - 36조 429) 34 - 36조 430) 34 - 36조 431) 34 - 36조 432) 34 - 36조 433) 34 - 36조 434) 34 - 36조 435) 34 - 36조 436) 34 - 36조 437) 34 - 36조 438) 34 - 36조 439) 34 - 36조 440) 34 - 36조 441) 34 - 36조 442) 34 - 36조 443) 34 - 36조 444) 34 - 36조 445) 34 - 36조 446) 34 - 36조 447) 34 - 36조 448) 34 - 36조 449) 34 - 36조 450) 34 - 36조 451) 34 - 36조 452) 34 - 36조 453) 34 - 36조 454) 34 - 36조 455) 34 - 36조 456) 34 - 36조 457) 34 - 36조 458) 34 - 36조 459) 34 - 36조 460) 34 - 36조 461) 34 - 36조 462) 34 - 36조 463) 34 - 36조 464) 34 - 36조 465) 34 - 36조 466) 34 - 36조 467) 34 - 36조 468) 34 - 36조 469) 34 - 36조 470) 34 - 36조 471) 34 - 36조 472) 34 - 36조 473) 34 - 36조 474) 34 - 36조 475) 34 - 36조 476) 34 - 36조 477) 34 - 36조 478) 34 - 36조 479) 34 - 36조 480) 34 - 36조 481) 34 - 36조 482) 34 - 36조 483) 34 - 36조 484) 34 - 36조 485) 34 - 36조 486) 34 - 36조 487) 34 - 36조 488) 34 - 36조 489) 34 - 36조 490) 34 - 36조 491) 34 - 36조 492) 34 - 36조 493) 34 - 36조 494) 34 - 36조 495) 34 - 36조 496) 34 - 36조 497) 34 - 36조 498) 34 - 36조 499) 34 - 36조 500) 34 - 36조 501) 34 - 36조 502) 34 - 36조 503) 34 - 36조 504) 34 - 36조 505) 34 - 36조 506) 34 - 36조 507) 34 - 36조 508) 34 - 36조 509) 34 - 36조 510) 34 - 36조 511) 34 - 36조 512) 34 - 36조 513) 34 - 36조 514) 34 - 36조 515) 34 - 36조 516) 34 - 36조 517) 34 - 36조 518) 34 - 36조 519) 34 - 36조 520) 34 - 36조 521) 34 - 36조 522) 34 - 36조 523) 34 - 36조 524) 34 - 36조 525) 34 - 36조 526) 34 - 36조 527) 34 - 36조 528) 34 - 36조 529) 34 - 36조 530) 34 - 36조 531) 34 - 36조 532) 34 - 36조 533) 34 - 36조 534) 34 - 36조 535) 34 - 36조 536) 34 - 36조 537) 34 - 36조 538) 34 - 36조 539) 34 - 36조 540) 34 - 36조 541) 34 - 36조 542) 34 - 36조 543) 34 - 36조 544) 34 - 36조 545) 34 - 36조 546) 34 - 36조 547) 34 - 36조 548) 34 - 36조 549) 34 - 36조 550) 34 - 36조 551) 34 - 36조 552) 34 - 36조 553) 34 - 36조 554) 34 - 36조 555) 34 - 36조 556) 34 - 36조 557) 34 - 36조 558) 34 - 36조 559) 34 - 36조 560) 34 - 36조 561) 34 - 36조 562) 34 - 36조 563) 34 - 36조 564) 34 - 36조 565) 34 - 36조 566) 34 - 36조 567) 34 - 36조 568) 34 - 36조 569) 34 - 36조 570) 34 - 36조 571) 34 - 36조 572) 34 - 36조 573) 34 - 36조 574) 34 - 36조 575) 34 - 36조 576) 34 - 36조 577) 34 - 36조 578) 34 - 36조 579) 34 - 36조 580) 34 - 36조 581) 34 - 36조 582) 34 - 36조 583) 34 - 36조 584) 34 - 36조 585) 34 - 36조 586) 34 - 36조 587) 34 - 36조 588) 34 - 36조 589) 34 - 36조 590) 34 - 36조 591) 34 - 36조 592) 34 - 36조 593) 34 - 36조 594) 34 - 36조 595) 34 - 36조 596) 34 - 36조 597) 34 - 36조 598) 34 - 36조 599) 34 - 36조 600) 34 - 36조 601) 34 - 36조 602) 34 - 36조 603) 34 - 36조 604) 34 - 36조 60	

<표 5> 가정복지분야의 재정 추계⁴⁾
(단위: 억 원)

구 분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가족공동체 문화 지원	가정단체지원	3.6	10	10	10	10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실시	-	5	5	5	5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	1.5	8	32	72	121.5	
전국가족실태조사	-	5	-	-	-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강화	88	163	264	308	376	
총예산	1,502.6	93.1	191	311	395	512.5

2) 건강가정사업의 영역과 지원

(1) 건강한 가정공동체문화 조성 사업과 지원

위에서는 건강가정정책에 대한 매크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건강가정사업의 실현을 위해 본 법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분류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표6 참고>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여기서 가족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사회환경의 조성과 교육 및 운동 들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생활문화를 시대에 맞게 재발견하고 그러한 문화정책을 관련 기관등과 같이 노력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는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사회단체, 교육기관, 가족연대들이 참여하여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등과 접목하여 가족공동체 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가족정보사업 등을 기업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사회문화환경을 만들려는 단체와 기관, 기업들의 공동체적인 참여활동을 위한 모티브제공과 정책지원은 작은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

<표 6> 건강가정공동체문화 조성과 과제

정책 명/영역	주체	과제	관련법 조항	비고
건강가정공동체문화 조성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가족기업	1. 가족가치의 존중(부양·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 공동참여) 2. 가정생활문화 발전과 지원 정책 개발(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 건강한 의식주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3. 건전한 가정의례 정책개발 4. 건강가정환경조성 및 평가(민주적이고 가정친화적 환경, 양성평등 가족사회환경 등)	제4조 제7조/ 제28조/제29조	* 가족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가족 생활의 가치 존중문화 형성 * 가정 생활문화 발전은 제28조 2항 참고

(2) 가정의 보호와 기능 강화와 지원

가정의 기능과 가족역할이 약화되어, 가족원이 보호되지 못하는 현상은 최근에 들어 더욱 심각해졌다. 김승권 등의 연구(2001, 2003:131-135)에 나타나는 가족기능수행도를 보면 7개 영역⁵⁾에서 일반가정은 대체로 높은 수행을 나타내고 있으나 모해체가족 유형은 모든 영역에서 아주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가 및 휴식의 기능은 현대가족의 아주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중간 이하이고 해체가정은 사회보장기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본 법의 기본방향이 가정의 기능강화와 다양한 가족의 문제해결과 욕구 충족인 관계로 건강가정사업에서 중요한 영역이 된다.

본 사업은 기존의 가족복지사업의 잔여적이고 치료적인 사업을 포함하여,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표7 참고> 위기가정과 다양한 가족문제를 가진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가족원을 보호하는 사업을 하면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미혼모가정, 취업부부가정, 장애인 가정, 공동체가정, 자활공동체, 흠티스의 다양한 가정이나 가정을 잊어버린 개인들을 포함한 대상을 중심으로 가정(가족생활)의 기능을 회복하고 역할을 보충 또는 보완해 주는 중요한 영역이 된다.

특히 취업부부 가정의 증가로 인한 자녀양육, 노인, 장애가족원의 부양 등의 가족 수발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위한 가정

4) (1)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수 : 2004년 3개소, 2005년 16개소, 2006년 64개소, 2007년 144개소, 2008년 243개소 등 개소당 1억 원씩 지원(국고 50%)

(2) 아동양육비 지원단가의 인상은 2005년 30,000원, 2006년 35,000원, 2007년 40,000원, 2008년 50,000원으로 연차별로 인상.(참여기획단, 2003)

5) 7개 영역은 경제적 기능, 경제적 부양 기능,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여가 및 휴식 기능, 사회보장 기능 등이다.

봉사원양성과 보급 등은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가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관련 부서간의 정책 협의와 관련 법률개정 등이 요청된다. 가정의 보호와 가정 기능강화를 위한 재정은 기존의 가족복지사업 예산과 함께 가정봉사원양성 및 파견사업 등을 관련 추후 재정을 추계해야 할 것이다.

<표 7> 가정의 보호와 가정기능 강화 사업

사업 영역	주체	내용	관련 조항	비고
가정의 보호와 기능 강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족/사회단체/기업	1. 가정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 개발 2.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수유와 관련한 모성 및 부성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3.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지원(위기가정 진급지원책 등) 4. 자녀양육지원강화정책과 조세 개발 5. 가족부양의 지원관련 제도와 기관 설립 개발 6. 가족의 건강증진정책개발 및 관련 부서간 협의 7. 빈곤 및 홈리스 등 가족보호를 위한 잔여적복지정책과 연계사업 계속 8. 가정봉사원 양성과 파견사업 9. 가정위탁보호사업	제21조/2조, 25조, 30조	*과제1-7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정책 개발주체이나 기업, 가정, 단체들의 지원네트워크 *과제8, 9은 국가의 정책 하에 관련단체, 가정들의 지원네트워크 가정기능의 지원내용은 21조1항(가족원의 정신·신체적 건강지원/소득보장등 경제생활안정/안정된 주거 생활/태아검진등 출산양육지원/직장과 가정약립/위해환경으로부터보호/가정폭력을부터보호/가정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모부자가정/노인단독가정/장애인가정/미혼모가정/공동생활가정/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형태 포함 *보육서비스/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가사노동재평가 *가족부양자(가족수발, 노인부양출산등)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건강증진정책 *가족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경우는 그룹홈, 가정 위탁보호사업 실시

(3) 가정의 잠재력 개발사업과 지원

보편적이고 보통의 가정의 능력을 개발하여 가정이 위기와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가족의 강한 연대나 사랑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통해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도 예방사업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의존적인 인간으로 태어나 가정(가족)에서 성장 발달하고 사회적인 존재가 된다. 여기서 가족의 건강성은 개인의 성장환경으로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된다. 이는

가족치료 및 상담분야에서 이미 검증되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가정생활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현재 대만이나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가족강화 정책을 폄고 있는 나라들은 가정생활교육을 의무화하거나 가족위원회를 통해 지역마다 강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교교육차원 뿐 아니라 공교육체계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

본 법에서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강화시키는 관련 과제와 지원을 살펴본다.<표8 참고> 결혼생활예비교육,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정윤리 및 가족가치교육, 가족의 건강성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고 평가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나 단체 등을 통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대학, 사회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기업(직장) 등을 통해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정과 학교를 통한 체험적인 교육은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교육에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표 8> 가정의 잠재력 개발과 지원

사업 영역	주체	과제	관련 조항	비고
가정의 잠재력 개발과 제도적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족/시민단체/기업	1. 건강가정과 관련한 교육 및 연구의 진흥정책 개발 2. 건강가정교육실시 3. 건강가정교육프로그램 개발 4. 건강가정사 양성 및 파견 5. 전문프로그램 연구기관 및 보급 6.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7. 교육훈련기관 협조 8. 공교육체계와 연계 9.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운동 10. 가족강화연대 모임운동지원 11. 가족단위자원봉사활동정책지원 12. 혼인과 출산의 가치인식(출산과 육아의 공공성 및 결혼의 가치 제고등) 13. 관련부처들 간의 정책협조(교육부, 문화관광부, 행자부 등)	제19조/제32조/제28조/제3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관련 교육이나 연구기관 설립, / 전문가 양성 함. * 건강가정 교육의 영역 참고 * 과제 2,3,4,7,8, 등은 민간단체나 학회들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실시 가능 * 과제 9,10, 11 등은 가정 단체, 학회 등 과연계 네트워크 * 관련부처와 협의

(4) 가정문제의 예방과 치료사업과 지원

가족문제의 예방과 치료사업은 고전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도 하다. 그 동안 민간단체나 가족복지사업차원에서 주로 해 왔지만 좀더 적극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게 된 것은 실제로 가족문제가 국가와 사회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서 이미 언급된 사안이다.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해 이제 전문가의 치료와 상담을 받기를 바라고 실제 스페셜리스트로부터 치료와 상담을 받음으로써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양성과 함께 전문가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전문상담기관에 의뢰된 경우에는 의무적인 상담과 건강보헤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상담과 치료의 전문성 확보 및 가족이나 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실직가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동반자살 등의 급격한 행위는 생명경시와 자녀의 소유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생명윤리의식과 자녀관에 대해 가정윤리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비극적인 불행은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은 지속적으로 사회단체나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표9 참고>

<표 9> 가정문제의 예방과 치료

사업 영역	주체	과제	관련 조항	비고
가정 문제의 예방과 치료 /가족/사회단체/기관(직장)	국가/자방자치단체	1. 일과 가족의 친화적 환경과 정책실시 2.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소 설립 및 지원 3. 가족해체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 4. 이혼예방 및 이혼 가정지원체계강화 5. 가족문제 해결 관련 전문가 양성 6. 가정폭력, 이혼 등 상담기관의 건강보험제도 도입 7. 관련부처간의 협의 8. 가족단위복지 증진 9. 가정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한 예방홍보 지원정책 10. 가족문제 직접개입 사업	*과제1~4, 과제6~10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개발을 하되 실행의 지원은 단체, 기업, 가정, 학회와의 네트워크 *가족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치료제도를 도입 31조 / *건강보험제도를 32조 / 전문치료기관에 도입 36조 / 전문치료기관에 도입 23조2 / *이혼상담전 상담의무화는 냉정기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음. 1조 / 1 *가족문제 예방 교육은 시민운동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 5조 / *가족해체예방은 가정의 건강성 교육과 문화 교육등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 *자녀입양, 이혼가출 청소년, 재가노인, 첨터운영 등	

(5) 건강가정을 위한 정보사업과 지원

사이버문화에 따라 가족생활도 변화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 가정의 인터넷 사용율은 58%를 이미 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건강가정정보사업은 매우 보편적으로 갈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의 중요성과 사업 등을 매체와 각종 행사를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 특히 각종 방송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왜곡된 가족은 민감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노력과 기념행사,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직장에서의 가정친화적 사업을 사원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가족 동아리 모임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건강가정을 위한 정보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매년 자원봉사대회를 통하여 좋은 자원봉사활동사업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여 자원봉사공동체를 늘려 가듯이 건강가정대회나 부부의 날 기념, 좋은 어버이모임대회 등의 다양한 이벤트와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겠다. <표10 참고>

<표 10> 건강가정정보사업과 제도적 지원

사업 영역	주체	과제	관련 조항	비고
건강 가정 정보 사업과 제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족/사회단체/기업	1. 건강가정을 위한 홍보 사업 2. 건강가정행사 기념사업 (이벤트)개발 3. 가족친화적인 일터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건강가정생활에 관한 인터넷정보관리체계 구축 5. 건강가정생활자료출판 6. 사원가족을 통한 건강 가정홍보 및 사업지원 7. 가족지원서비스사업 독려 8. 가정간의 교류 및 동아리 활동 독려 9.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홍보 및 직접 사업 10. 건강가정관련자원봉사 활동의 지원과 사업개발 11. 사이버를 활용한 가정 정보개발과 교육과정 지원 12. 가족실태조사의 실시와 정보체계수립	제 12 조/11 조/26 조/33 조/36 조/20 조	* 건강가정홍보사업은 정책 주체들이 거버넌스적인 협조체계가 기본으로 되어야 할 것임. * 건강가정을 위한 기념 홍보행사(가정의 달, 가정의 날 행사, 부부의 날, 어버이의 날 등) * 인센티브제 도입, (가족친화적 일터 및 사업 기관에 상금, 상징기관, 세제 지원 등) * 전국 및 지역가족 실태조사는 전반적인 가족정책수립을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함

(6) 건강가정사업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통합 지원

건강가정기본법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림3>에서 언급되었듯이 가족의 위기 및 해체로 인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불안이 높아지고, 저출산 고령화 여성취업 등으로 인한 가족유지의 어려움과 사회발전의

저해현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족, 사회단체, 직장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정을 지원하게 되면 건강한 가정생활유지와 가족의 유지발전이 가능하다.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유지는 곧 국가의 비용 감소와 국가의 적정한 인구 계획 경제활동인구 유지, 국가경쟁력 등에 직접 간접 도움이 있게 된다. 또한 가정과 타인은 자녀를 비롯한 가족원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사회문제로 지역사회에 여러 형태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거버넌스 측면에서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건강가정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는 곧 매크로적인 가정(가족)정책이 되어야 한다. <표11>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이기는 하나 전자의 가정복지과제들과 중첩되기도 한다. 다만 추후에 관련법령대조와 함께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정책화하는 과정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표 11> 건강가정사업과 정책적 통합 지원

사업 영역	주체	과제	관련 조항	비고
1. 소득보장정책		1. 공적부조를 통한 최저생활가정의 보호 2. 사회보험을 통한 가족보호와 가족단위생활보호 3. 가족수당 자녀양육수당, 보육수당 등 각종 가족양육 및 가족부양지원정책 개발 4. 가족수당제도 및 가족지원 및 양육기금조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4대보험·개호보험등의 개발과 관련 법령 개정	
2. 자녀양육 및 부양지원정책		5. 가족기금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도입 6. 노인가족을 위한 개호보험의 도입 7. 노인부양가족세제공제 제도 8. 보육의 공공성 제고 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건강정보제공 및 건강체크제도 10. 모성보호, 가족간호제 도입 11. 임신 출산에 따른 의료보장 및 지원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족법, 근로기준법등의 관계법령제고	
3. 의료보장정책		12. 일과 가족의 균형적인 삶을 위한 여가정책수립 13. 의식주, 가족생활의 적절한 보장체계	*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관련법 남여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4. 가정생활문화정책	국가/지방자치단체	14. 가정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 15. 합리적인 가정의례 및 장묘문화정책 16. 취약계층 위기가정의 가정생활문화보호 17. 가정보호를 위한 각종시설 및 상담센터제공 18. 보호대상가정에 직접지원정책 19.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등의 관련시설 및 관련법 제고 20. 가족문제관련 전문시설설치 21. 가족문제치료 및 상담전문가 양성체계 22. 관련 법률제고	청소년 보호법, 정신보건법, 장애인 복지법, 학교관련 법등의 관련법률의 제고 * 기타 결혼과 가정 지원을 위한 특별 사업이 필요시에는 관련 법률제정 필요(여가관련법, 출산과 결혼안정유지법, 가족생활 교육 사업 법적인 등)	
5. 가족보호의 기능강화정책				
6. 가정문제의 예방과 치료체계수립정책				

IV. 맺음말

본고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가정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의 분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난제였다. 참여정부의 방향이 관료적인 정부체제를 벗어나 기업적인 정부 또는 사회중심거버넌스로 간다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정정책의 주체와 방향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정책적 지원을 논의한다는 것은 더욱 난제였다. 오히려 본 원고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가정정책의 행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건강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달체계는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행정의 기본전달체계를 차입했지만 과거의 전달체계모형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과 관련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족, 가족의 일터 직장(기업) 가족원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조직, 단체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이제는 이미 시대착오적이다. 특히 사이버시대를 사는 가족원은 가족의 정보와 사이버가족동아리 등의 활동과 네트워크를 고려한 시스템구축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나누어진 건강가정사업의 영역은 건강가정기본의 기본틀과 가정복지종합발전계획, 참여복지5개년계획 등의 목표와 이념을 고려하여 분류하여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난제이다.

또한 재정확보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국의 경제현실과 재정투융자계획, 각종 사업들이 맞물려 있다. 여기서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분리하고, 지역자원개발과 시민참여와 공동체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연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과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망라하여 정책과제로 제시하여 혼란스럽기는 하다. 기초자료로 제안된 각종 사업을 참고로 하여 좀더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전달체계를 통한 지원이 제대로 되려면 2005년 본법이 시행되기까지 행정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행정에서 가정정책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특히 건강가정정책은 이제 가정(가족)에 대해 전문적이면서도 소신이 있는 전문가와 단체들에 의해 정책입안과 과제가 실행되어야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정신보건복지, 여성복지정책도 관련 전문가에 의해 입안되고 전문가 및 단체를 양성하고 있다. 가정(가족)정책은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모든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간계로 학제적인 접근이 어느 영역보다 많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가족)의 관련전문가와 단체들이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안고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학제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개념 합의, 이해를 하려는 학자적 자세가 필요하다. 건강가정에서 건강이 무엇이며, 가정(가족)의 차이점, 건강가정정책과 사업의 기본 틀 등을 함께 협의될 때 학제간의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신은 거버넌스적 정부와 인간생태학적 측면에서 사업과 정책을 개발한 점, 가정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는 점, 시민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상호협력적인 가공동체를 개발하는 점에서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용어와 중립적인 표현이 기본법안에 녹아 있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법조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좀더 구체화 될 것이며, 기본법에 담지 못하는 사업과 정책들은 다시 사업법적인 구체적인 법률로 제정되리라 본다.

한국여성단체연합(2003). “성인지적인 가족정책을 모색한다”.
세미나자료집

- 접 수 일 : 2004년 07월 15일
- 심 사 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9월 22일

【참 고 문 헌】

- 김승권 외(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7.
- 김승권 외(2003).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76.
- 김의균(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 김태성(200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
- 노시평 외(2001).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대경.
- 박병호 외(1996).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 박영란 외(2001).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 성영혜 외(1997).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신복기 외(2003).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 이소희 외(2004). **사회복지개론**. 현학사.
- 이택룡 외(2001).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 정민자(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입법 방향과 내용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대한가정학회.
- 정민자(2004).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정정책의 방향 “행복한 아동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세미나”**.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위원회.
- 참여복지기획단(2004). 참여복지 5개년계획.
- 최경석 외(2001).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표갑수(2003). **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 한국가족학회(1995).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도서출판:하우.